

## [2024 꿈의 오케스트라 군포] 교육강사 채용 공고

(재)군포문화재단에서 지역 아동·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다면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사업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월 24일  
(재)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직무내용	비고
강사(비올라)	1명	- 파트별 악기 및 앙상블 교육	주 2일 근무
강사(클라리넷)	1명	- 합주지도 및 연주회 참여	
강사(트롬본)	1명	- 교육법 연구 및 개발	

###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4. 2. 19 ~ 사업종료시
- 근무시간 : 주 2일(월·수) 17:00~19:00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장소 : 군포문화예술회관(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99)
- 보 수 : 시간당 43,000원

### 3. 응시자격

구분	자격요건
필수사항	- 국내·외 관련분야(해당 악기전공)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최근 10년 이내 오케스트라 또는 앙상블 활동 경력 3년 이상 보유한 자 - 「군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우대사항	- 앙상블 합주지도 가능한 자 - 현재 오케스트라 또는 앙상블 활동 연주자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만34세 이하 청년층(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 4. 전형방법

- 1차(서류심사) : 채용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구비 여부 심사
- 2차(면접심사)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종합평가

##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1. 25.(목) ~ 2. 7.(수)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gunpoart@naver.com)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유의사항
  - 접수 시 이메일 제목 '신청자명\_채용분야(ex. 홍길동\_Va./Cl./Tb. 교육강사)'
  - 송수신 오류 등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필히 확인 바람

## 6.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첨부양식)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제출

## 7. 채용일정

구분	일자	비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2. 8.(목) 17:00	개별연락
면접시험	2024. 2. 14.(수)	군포문화예술회관 중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2. 15.(목)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8. 기타사항

- 양식이 변형된 지원서는 접수 불가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경우에는 위조·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오기재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고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문화재단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따름
- 기타문의 : 군포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예술진흥팀(☎ 031-390-3554)

### 《군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9.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로 형의 집행 또는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1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수습 또는 정식 임용 후 제1항의 결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임용사항을 취소하여야 한다.